

2024년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(저온·저장고) 지원사업 사업자 5차 모집공고

2024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(저온·저장고)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 : 공고 게시일부터 ~ 2024. 10. 11.(금)18:00까지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(저온·저장고) 지원사업
- 사업량 : 1개소
- 사업목적 : 수산물의 선도유지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
- 사업금액 : 600만원(도비 21% 시비 49% 자담 30%)
 - ※ 보조금 420만원 자부담 180만원
 - ※ 사업비(600만원)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
- 사업대상 : 어업인, 어촌계, 생산자단체 등
- 사업내용 : 수산물 저온·저장고 구입 지원
 - 사업기준 :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(9.9㎡ 이상) 설치

3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(수산인의 기준 등)에 해당하는 자로써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(관련근거 :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)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사업대상자
- 본인 소유의 시설 부지를 확보한 사업대상자
 - 신청 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확보자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
- 어업인의 경우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

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·가공법인 제외)

- 비법인이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, 어업(수산업)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(재무제표, 위판실적 등)이 1년 이상일 것
 - ※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- 본 시설은 건축법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 허가(가설건축물)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확인되어야 함

4.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

○ 선정기준

-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, 부지확보, 자부담 능력,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

○ 제외대상

- 최근 5년(19~23년도) 선정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※ 사업자 선정 전 신청한 사업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발급 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신고필증 발급 부적합한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
○ 우선순위

- ① 「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」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
- ②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
- ③ 어업인 조직
 - 어촌계, 어업계 순으로 함
 - 동 순위인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순으로 함
- ④ 생산자단체
 - 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(주식회사), 협회(단체), 개인사업자 순으로 함
 - 동 순위인 경우 고용인원(4대보험 가입기준), 매출실적이 많은 순으로 함
- ⑤ 어업인
 - 사업장소(시설부지) 섬·연륙도서, 비응동, 오식도동, 소룡동, 해신동 우대(이외 장소는 서류검토 후 사업대상 적합여부 판단)
 - 어선어업인(허가어업), 맨손어업인(신고어업), 내수면어업인, 양식어업인

(면허어업)순으로 함

- 동 순위인 경우 2023년도 생산실적이 많은 자

※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,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 어선업은 지원 제외

5. 접 수 처 :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7층 수산물유통가공계(직접 방문 접수)

6. 구비서류

1.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각 1부
2.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(타명의 토지일 경우,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주 신분증 사본 필요)
3.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(통장 잔고증명) 1부
4. 어업경영체등록증 및 각종 어업인허가증(허가, 면허, 신고증 1개만 제출)
5. '23년도 수협위판 실적(어업인, 어업인조직) 및 매출 실적자료(생산자단체)
6.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
7. 어촌계 총회 회의록(어촌계의 경우)
8. 이사회 회의록(주식회사, 법인의 경우)
9. 기타 요청서류(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)

7. 참고사항

- 건축 허가(가설건축물)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

8. 문 의 처 :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수산물유통가공계(☎ 454-2804)

2024년 9월 일

군 산 시 장

